

출원

APPLICATION

01} 외국어(영어) 출원 제도 도입('15.1.)

- 출원인이 특허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도록 외국어(영어) 출원 제도 도입
- 다만, 특허 출원시 제출한 외국어(영어)로 작성된 명세서에 대해 일정 기간 (최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)내에 국어번역문 제출 필요

02} 특허청고시 상품명칭으로 출원한 경우 상표 출원료 인하('15.1.)

- 상표(서비스표) 출원 시 지정상품을 특허청이 고시한 목록의 상품으로 기재하여 출원하면 출원료 감면
- 단, 온라인 출원에 한하며 1상품류 구분마다 6만2천원에서 5만6천원으로 출원료 인하

03} 특허수수료 감면관련 중소기업 증명서류 변경('15.4.)

- 상시 근로자 수, 자본금, 매출액으로 중소기업여부를 확인했으나 '15.4월부터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확인(중소기업기본법 개정)
- 중소기업증명서류 예시 : (표준)손익계산서, 중소기업확인서,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, 중·소기업·소상공인확인서, 벤처기업확인서,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, 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

04} 청년 및 원로발명가에 대한 수수료 감면제도 확대실시('14.3.)

-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자와 만 6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출원료, 심사청구료, 최초 3년분 특허(등록)료의 85% 감면
- 단, 발명(고안·창작)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

등록

REGISTRATION

05} 산업재산권 존중 및 자부심 고취를 위한 등록증 디자인 개선 ('15.1.)

- 우리나라 발명의 우수성 및 발명자 명예와 공로 존중을 모티브로 한 산업재산권 등록증 개선 및 발급
- 등록증에 훈천의, 양부일구, 천체지도, 훈장문양 등을 모티브로 등록증 디자인 개선

06} 해외 홍보 등 편의제고를 위한 상표·디자인 영문등록증 발급 ('15.1.)

- 기업 등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 편의제고를 위한 상표·디자인 영문 등록증 발급
- 외국어등록증 발급 신청서와 등록증에 적어야 할 사항에 대한 번역증명서류 (공증서, 번역확인증명서 등) 제출

07}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권리이전 제출서류 명확화 ('14.11.)

- 금융기관이 질권행사를 위하여 단독으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,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기위해 등록사무취급규정 개정
- 산업재산권 금융과 관련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이 상법 제59조에 따른 유질계약을 근거로 채무불이행사실증명서 등 제출

08}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제도 확대 실시('14.3.)

-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의 1~3년분 설정등록료 감면(기준)과 함께 4~6년분 연차등록료 30% 감면 확대 실시 (대상 : 개인, 중소기업, 공공연구기관, 전담조직, 중견기업)
- 등록료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 납부서와 함께 감면증명서류 제출
- 단, 개인은 발명(고안·창작)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

국제출원

INTERNATIONAL APPLICATION

09} PCT 국내진입단계에서의 보정기간 확대('15.1.)

- PCT 국내단계 진입을 위해 제출한 '특허법 제203조에 의한 서면'에 대해 보정을 요청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보정하여야했으나, 2개월 이내에 보정가능하도록 보정기간 연장

10} 마드리드 통지서 송달 방법 개선('14.6.)

- 국제출원서 사본송부서 등 마드리드 국제출원 관련 일부 통지서에 대해 온라인 수령이 불가능하였으나, 모든 마드리드 국제출원 관련 통지서에 대해 온라인 또는 서면 수령 중 선택 가능

11} PCT 출원인 겸 발명자 정보 변경 일괄처리 도입('14.3.)

- 출원인 겸 발명자의 경우 (정보)변경사유 발생 시 각각 신고서를 제출하여야했으나, 한 번의 신고서 제출로 일괄 정보변경이 가능

